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

지방소득세(법인세분)을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.

- 근거조항 :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
- 납 세 자 : (주)보광플러스
- 부과취소 내역

(단위:원)

세 목	건 수	당 초	취 소	차 액	부과취소사유
지방소득세 (법인세분)	1	53,129,670	53,129,670	0	국세경정

- 붙 임 :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통보자료 1부. 끝.

주무관 이정아 지방소득세2팀 이원봉 세무2과장 박해선 기획재정국장 05/02 한수경

협조자